

● **본 시험 응시에 관한 연방 및 뉴욕주 관련법은 무엇입니까?**

연방 낙오아동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에서는 주에서 매년 3-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시험을 실시하고, 3-5학년과 6-9학년동안 최소 1회 이상의 과학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방 및 주법에 따라 3-8학년 공립학교 학생들은 각 학년레벨에 맞는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 **시험 결과는 무엇에 사용됩니까?**

주 시험은 핵심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학생이 과목별 지식과 기술을 잘 습득했는지 판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학습지도를 해야할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올해는 사상 최초로 3-8학년 대상으로 공통핵심 학습표준(Common Core Learning Standards)에 근거한 영어 및 수학시험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진학이나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각 학년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과목별 지식을 제대로 습득했는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교사들은 수업 중 과제, 프로젝트, 에세이 및 교내 시험과 더불어 뉴욕주 시험 결과를 통해 학생들이 현재 대학진학 및 취업에 대비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있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뉴욕주 시험 결과 및 기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하여 학생이나 학교에 관한 각종 결정을 내리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뉴욕주 시험 결과는 학생들을 다음 학년으로 진급시키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일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입학 사정의 한 요인으로 참작하기도 합니다. 한편 뉴욕시 교육청에서 뉴욕시 공립학교들을 평가하여 발간하는 [진척보고서](#)에도 뉴욕주 시험결과가 사용됩니다. 뉴욕주에서는 이러한 시험결과를 이용해 각 학교들이 주 및 연방 책임 요건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음 학년도부터 뉴욕시에서는 주법에 의거하여 이러한 시험결과를 교사평가의 일환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평가가 점점 더 어려워짐에 따라, 변경되는 시험에 의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시험 후 써머스쿨에 다니는 조치를 받게되는 학생 수도 예전과 비슷할 것입니다. 교사평가 및 학교 책임요인 평가기준 역시 조정되어, 변경되는 시험으로 인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뉴욕주 시험 변경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Common Core Library](#)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부모들이 자녀의 뉴욕주 시험 제외 요청을 하거나 대안 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위원회(CSE) 평가나 학생인권보호 조항(Protection of Pupil Rights Amendment) 하에 연방기금을 받아 시행되는 일부 평가 및 분석을 제외하고는 학부모들이 자녀를 뉴욕주 시험에서 제외시키도록 요청하거나 대안 평가 요구를 허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뉴욕주 [안내서](#) (영어로만 제공)를 참고하십시오.

● **학부모가 뉴욕주 시험 제외 요청을 할 때 특정한 언어를 사용해야만 합니까?**

학부모 동의가 필요한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는, 부모가 자녀의 뉴욕주 시험 제외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뉴욕주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다음학년 진급, 입학 및 학교 책임평가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시험이 실시될 때 학생이 결석하거나 응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실시일에 학생이 결석할 경우, 학교에서는 보충시험 일자를 잡아 시험을 실시할 것입니다. 학생이 보충시험일에도 결석할 경우, 그 학생은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다. 만일 학생이 출석하고도 뉴욕주 시험 응시를 거부한다면, 그 학생은 그 시간동안 다른 학습활동(예, 책 읽기나 프로젝트 또는 과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 **학생이 뉴욕주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학생이 뉴욕주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학년 진급이나 상급학교 입학에 영향을 주고, 해당학교의 평가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진급 결정에 있어서는, 뉴욕주 시험 결과가 없는 학생은 [교육감 규정 A-501](#)에 의거하여 포트폴리오 평가로 대체합니다. 포트폴리오 평가는 학생의 학업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특정한 결과물에 근거하여 실시됩니다. 포트폴리오 평가 결과는 교사, 학교장이 일차 검토한 후 학군 교육장이 최종 검토 후 표준 벤치마크에 근거하여 진급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포트폴리오 평가에 근거하여 해당 학년의 학업능력을 인정받은 학생은 진급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일부 IEP가 있는 학생들 및 일부 ELL 학생들은 [교육감 규정 A-501](#)에 근거하여 별도의 진급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입학 전형에 있어서는, 3학년 및 4학년 뉴욕주 시험 결과가 4, 5학년 영재 프로그램 배정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4학년 점수는 일부 중학교 프로그램 입학 기준으로, 7학년 점수는 고등학교 입학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학생의 출석률도 입학전형의 한 가지 요인이 됩니다. 뉴욕주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도 이러한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있기는 하나, 다른 학생들에 비해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까닭에 전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포트폴리오 평가나 기타 정보를 참작할 수도 있으나, 모든 학교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학교 책임 평가: 주 및 연방 책임법에 의해, 뉴욕주에서는 각 학교의 뉴욕주 시험 참여율을 조사합니다. 이유(결석, 시험 거부)를 불문하고 학교 전체, 또는 어떤 특정 집단(예, 히스패닉 학생들, 장애학생, ELL 학생)의 응시율이 95% 이하일 경우, 이 학교는 적정 연례 진척(Adequate Yearly Progress)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적정 연례 진척 (AYP)을 이루지 못한 학교는 뉴욕주에 의해 지역 지원계획 학교(Local Assistance Plan school)로 구분됩니다. 또한 AYP을 충족하지 못한 학교는 Reward school이 될 수 없으며, 기존의 Priority 및 Focus 학교 중 AYP 응시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학교는 부정등급(negative status)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Priority, Focus 및 Local Assistance Plan 학교들은 집중 검토 후 지원 또는 중재 조치가 취해집니다.

2014-15 학년도까지는 신규 Priority 학교를 선정하지 않을 예정이나, 각 학교들의 책임등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Good Standing에 있던 학교들이 Local Assistance Plan 학교가 될 수 있으며, 기존의 Priority 및 Focus 학교들이 AYP 참여율 및 기타 수행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정등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중재 결정은 다양한 요인을 집중 검토한 후에 이뤄집니다. 어떤 중재 결정도 뉴욕주 시험 응시율 한 가지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 **올해의 뉴욕주 시험 결과는 뉴욕시 진척보고서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올해 시험 결과는 각 학교별 뉴욕시 진척보고서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뉴욕주 시험이 공통 핵심 학습표준에 근거해 변화됨에 따라 진척보고서는 각 학교의 수행도를 다른 학교와 비교해 측정함으로써, 이러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예년에 비해 낮은 성적을 받은 학교일지라도 타학교, 특히 비슷한 집단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다른 학교들과 비교해 학생들의 성적과 수행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진척보고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초등 및 중학교 성적 분포 역시 고정되어, 낮은 성적을 받는 학교들의 비율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올해의 뉴욕주 시험 결과는 교사평가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올해는 시험 결과는 교사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교사들은 학생 점수가 반영되지 않는 기존의 Satisfactory/Unsatisfactory 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받게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험 점수도 교사 평가에 반영될 것입니다. 뉴욕주 교사 성장 측정 모델에는 변경된 시험내용으로 인하여 교사 평가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보호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